

## 고려대학교 세종총학생회 일반규칙

일반규칙 연번	일반규칙 제명	최신 개정연혁	별표 · 서식 · 부록
제1호	정회원 등록제 운영규칙	2020. 10. 15. 【제정】	[별지 서식] 정회원 등록 신청서 · 증명서의 서식
제2호	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학생회관 이용규칙	2020. 10. 15. 【제1차 개정】	-
제3호	교내 홍보게시물 관리 규칙	2024. 03. 09. 【제3차 개정】	-

# 정회원 등록제 운영규칙

[고려대학교 세종총학생회 일반규칙 제1호]

2020.10.15 제 정

**제1조 【목적】** 이 규칙은 「총학생회칙」 제4조 6항의 정회원 등록제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【적용범위】** 정회원 등록제의 대상은 이 회의 준회원, 수료회원으로 한다.

## 제3조 【등록효력기간】

① 정회원 등록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실시한다.

1. 1학기 정회원 등록기간 : 1학기 개강일부터 2학기 개강일 전날까지
2. 2학기 정회원 등록기간 : 2학기 개강일부터 이듬해 1학기 개강일 전날까지

② 정회원 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는 정회원 등록 신청서와 함께 휴학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정회원 등록 신청서 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.

④ 등록 절차를 이행한 자는 제1항의 각 호의 기간에서 남은 기간 동안 정회원이 된다. 이 때 산하기구의 정회원으로도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## 제4조 【운영】

① 정회원 등록제의 운영은 중앙집행위원회가 한다.

② 중앙집행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정회원 등록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이행한 자가 속한 산하기구에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전달한다.

③ 중앙집행위원회는 정회원 등록이 완료되면 정회원 등록 신청자에게 정회원 등록 증명서를 준다.

## 제5조 【효력】

① 「총학생회칙」 제116조, 「선거시행세칙」 제5조의 4학기 이상 재학에서 정회원 등록제의 등록 또한 한 학기 재학한 것으로 인정한다. 산하기구도 이를 준용한다.

② 정회원 등록제로 등록한 정회원은 학생총투표 총학생회장단 선거 등에서 정회원 명부에 포함된다. 단,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당선 공고일까지 등록한 정회원은 선거권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.

③ 정회원 등록제로 등록한 정회원은 산하기구의 투표, 선거에서 정회원 명부에 포함된다. 단, 산하기구의 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하거나 각 기구별로 정하여 정회원 등록제로 등록한 정회원

을 선거권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.

#### **제6조 【총학생회비 납부】**

-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준회원이 정회원 등록제를 통해 정회원으로 등록할 때 재학생이 등록할 때와 동일한 금액의 총학생회비를 받을 수 있다.
- ② 정회원 등록제로 납부된 총학생회비는 다음 학기의 총학생회비를 분배할 때 「재정운용세칙」에 따른 비율대로 분배되어야 한다.

**제7조 【정회원 등록자 명단 관리】** 정회원 등록자들의 명단은 중앙집행위원회가 전자문서의 형태로 관리한다. 이때 정회원 등록자들의 정회원 등록 신청서와 휴학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도 전자문서의 형태로 만들어 보관한다.

## **부칙**

이 규칙은 공포 후 48시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] 정회원 등록 신청서·증명서의 서식

##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총학생회 정회원 등록 신청서

단과대학·독립학부		학부·학과	
학번		성명	
휴대전화		총학생회비 납부	O / X
휴학생 전용	휴학증명서상 휴학 기간	20__년__월__일 ~ __년 2월 28【29】일 / 8월 31일 【20__학년도__학기】	
수료생 전용	수료일자 및 수료증명서 발급일자	20__년__월__일 / 20__년__월__일	
정회원 등록 기간		20__년__월__일 ~ __년 2월 28【29】일 / 8월 31일 【20__학년도__학기】	

본인은 「총학생회칙」 제 4조에 따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총학생회 및 소속 산하기구의 정회원 등록을 중앙집행위원회에 신청합니다.

신청연월일 : 20\_\_년\_\_월\_\_일

신청인 : \_\_\_\_\_【인】

등록 승인 :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총학생회 【인】

-----【절취선】-----

##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총학생회 정회원 등록 증명서

단과대학 독립학부 : \_\_\_\_\_ 학부 학과 : \_\_\_\_\_

학번 : \_\_\_\_\_ 총학생회비 납부 : O / X 성명 : \_\_\_\_\_ 【인】

위 사람의 20\_\_학년도\_\_학기 정회원 등록을 증명합니다.

등록연월일 : 20\_\_년\_\_월\_\_일

등록 승인 :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총학생회 【인】

#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학생회관 이용규칙

[고려대학교 세종총학생회 규칙 제2호]

2020.10.15 제 정

제1장 총칙 .....	
제2장 분배 .....	
제3장 선발 .....	
부칙	

## 제1장 총칙

### 제1조 【목적】

- ① 본 수칙은 학내 모든 단체에 공간 사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회관 이용률을 제고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.
- ② 더 나아가, 보다 더 자유롭고 능동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촉진하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전체 학우의 복지 증진과 건설적인 대학문화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【심의·의결】** 본 수칙에 대한 심의·의결의 권한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상위 의결기구에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.

### 제3조 【대상】

- ① 다음 각 호의 단체는 학생회관 사용의 권리와 수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.
  1. 총학생회 및 산하 특별위원회
  2. 기구학생회
  3. 동아리 연합회 소속 동아리
  4. 이 외의 공간을 사용하는 학생자치단체

## 제2장 분배

### 제4조 【총학생회, 기구학생회, 특별위원회】

- ① 총학생회, 기구학생회는 배정받은 공간을 사용하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간의 정당성에 대하여 심의하지 않는다.
- ② 특별위원회의 공간문제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상위 의결기구에서 심의·의결한다.

### 제5조 【동아리연합회 소속 동아리】

- ① 동아리연합회는 배정받은 공간을 사용하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간의 정당성에 대하여 심의하지 않는다.
- ② 동아리연합회 내에서 공간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보고한다.
- ③ 동아리연합회는 중앙동아리 자치등록원서 심사 결과를 하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보고한다.

**제6조 【이 외의 공간을 사용하는 학생자치단체】** 2019년 상반기 이후 선발된 단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새로운 규칙을 적용한다.

- ① 매년 하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활동보고 및 제적심사를 진행한다.
- ② 제적심사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거치고, 선발된 단체가 있을 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심의, 의결한다.
- ③ 제적된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해 공간신청자격을 박탈한다.
- ④ 제6조 2항에 의거한 심의 후 반환된 공간은 매년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심의, 의결하여 선발한다.

## 제3장 선발

### 제7조 【선발방법】

-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매 3월 반환된 공간에 대한 희망 단체 모집을 공고하여야 한다.
-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신청한 단체를 사전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빈 공간 수의 최소 1배수에서 최대 2배수의 단체를 선발한다.
- ③ 최종선발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심의·의결하여 공간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.

### 제8조 【선발기준】

- ① 제2장 제6조와 제3장 제7조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둔다.
  - 1. 전체 학우 전반의 관심사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단체
  - 2. 전체 학우에게 열려있는 단체
  - 3. 특정 단위에 소속되어있지 않은 단체
  - 4.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공간이 필요한 단체
  - 5. 1년 이상의 활동 실적과 투명한 구조로 이루어진 단체

## 부 칙

### 제9조 【효력】

- ① 본 수칙은 제·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- 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상위 의결기구의 심의·의결사항은 그 즉시 효력을 갖는다. 공간 철수는 의결 후 1주 안에 집행한다.

### 제10조 【예외조항】

- ① 학생휴게실등의 학생복지시설의 증설·철거에 관하여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혹은 상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하여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집행한다.

② 학생 복지를 위한 시설물 및 학교기구는 학생회관 내 위치할 수 있다. 단, 전체학생대표자 회의에서 각 시설 또는 기관에 대한 철수를 요구 할 수 있다.

③ 의결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 등이 발견되는 즉시 해당 단체의 모든 권한을 박탈한다.

# 교내 홍보게시물 관리규칙

[고려대학교 세종총학생회 규칙 제3호]

2017.09.25 제 정	2020.10.15. 개 정
2021.04.08 개 정	2023.03.09 부 분 개 정

제1장 총칙 .....

# 제1장 총칙

## 제1조 【목적】

- ①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교내 홍보게시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캠퍼스의 환경을 정리.개선하고,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
- ② 바람직한 홍보게시물 문화 정착을 통하여 대학 홍보문화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【홍보게시물의 구분】

- ① 교내에 부착 또는 게시되는 모든 홍보게시물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.
  - 1. 학생 게시물 : 학생을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교내의 개인 및 학생단체가 제작한 게시물
  - 2. 일반 게시물 : 학생 게시물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게시물

## 제3조【운영 및 관리】

- ① 게시물의 운영 및 관리는 총학생회, 각 단과대학 학생회, 동아리연합회에서 총괄하며, 건물별 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  - 1. 가속기ICT융합관 - 과학기술대학 학생회
  - 2. 공공정책관 - 공공정책대학 학생회
  - 3. 과학기술 1관 - 과학기술대학 학생회
  - 4. 과학기술 2관(1층 제외) - 과학기술대학 학생회
  - 5. 석원경상관 - 글로벌비즈니스대학 학생회
  - 6. 문화스포츠관 - 문화스포츠대학 학생회
  - 7. 농심국제관 - 총학생회
  - 8. 학생회관 - 동아리연합회
  - 9. 산학협력관 - 과학기술대학 학생회
- ② 제3조 【운영 및 관리】 제1항에 명시된 건물에 한해서 교내 홍보게시물 관리규정을 적용한다.
- ③ 교내 홍보게시물 관리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, 각 단과대학운영위원회,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다.

## 제4조 【홍보게시물의 규격】

홍보게시물의 규격은 소자보와 대자보로 나뉜다.

- ① 소자보는 210mmX297mm(A4) 이하의 홍보게시물을 의미한다.
- ② 대자보는 210mmX297mm(A4) 초과, 594mmX841mm(A1) 이하의 홍보게시물을 의미한다.

다.

#### **제5조 【홍보게시물 부착】**

- ① 교내에 홍보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건물별 관리 부서에서 지정한 게시판에 한하여 부착하여야 한다.
- ② 하나의 게시판에 중복하여 게시할 수 없다.
- ③ 홍보게시물을 교내 도로, 나무, 건물 외벽, 가로등에 게시할 수 없다.
- ④ 건물별 부착 가능한 홍보게시물 개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1. 가속기ICT융합관 - 소자보 3장, 대자보 1장
  2. 공공정책관 - 소자보 10장, 대자보 5장
  3. 과학기술 1관 - 소자보 8장, 대자보 4장
  4. 과학기술 2관 - 소자보 8장, 대자보 4장
  5. 글로벌비즈니스관 - 소자보 5장, 대자보 5장
  6. 문화스포츠관 - 소자보 8장, 대자보 5장
  7. 농심국제관 - 소자보 10장, 대자보 4장
  8. 학생회관 - 소자보 10장, 대자보 5장

#### **제6조 【게시 승인】**

- ① 교내에 게시물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 각 건물 관리부서의 게시 승인을 받고, 게시물에 날인과 수거일을 받아 지정 게시판에 게시한다.
- ② 지정 게시판 외에는 원칙적으로 홍보 게시물을 부착할 수 없다. (단, 각 건물 관리부서 대표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홍보게시물은 예외로 한다.)
- ③ 관리자가 홍보게시물의 부착을 승인할 때에는 홍보물의 규격과 게시 기간을 확인한 후 홍보물에 날인하여야 한다.

#### **제7조 【게시 기간】**

- ① 기한이 명확한 홍보게시물은 행사 시작일 14일 전부터 종료 후 1일 이내로 게시한다.
- ② 행사목적 이외의 홍보게시물은 14일 이내로 게시한다. (단, 예외사항의 경우 제3조 【운영 및 관리】 제3항을 따른다.)

#### **제8조 【철거】**

- ① 홍보게시물은 원칙적으로 게시 기간 후 게시자가 철거하여야 한다.
- ② 게시 기간이 지난 홍보게시물이 자진 철거되지 않을 경우, 관리 부서에서 철거한다.

### **제9조 【관리자의 임무 및 권한】**

- ① 해당 게시판 관리부서는 수시로 게시판을 점검.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게시판 관리자는 다음 게시물을 철거할 수 있다.
  1. 승인을 받지 않은 게시물
  2. 지정게시판 이외의 게시물
  3. 게시기간이 경과한 게시물
  4. 게시물의 내용 및 규격 등이 학교의 면학분위기 및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시물
- ③ 제9조 【관리자의 임무 및 권한】 제2항 1, 2, 3, 4호 위반 시 경고를 준다.
- ④ 경고 2회 시 중앙운영위원회, 각 단과대학운영위원회,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해당 단위에 대한 징계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.

### **제10조 【보호 및 책임】**

- ①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게시한 홍보물을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교내 홍보게시물 관리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.
- ② 규정을 위반한 홍보물은 건물 관리부서 대표자의 책임 하에 지체없이 회수 또는 철거한다.
- ③ 각 게시판은 해당건물 관리부서에서 담당한다.

### **제11조 【기타】**

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.